관리번호 -

## 년 귀속)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

거주구분 거주자1 / 비거주자2 내・외국인 내국인1 /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/ 부 2 분리과세 주택임대 여 1 /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

				신청인이 작성	성하지 않으며	ᅧ, 두	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			
	기년									
(3)	성 주						②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-			
	납	세 :	지							
	› 급 · '' · '' ) 주소지 전화번호						⑥ 사업장 전화번호			
7			<u> · · _</u> 전 화				⑧ 전자우편주소			
				1 복식부기	의무자		②간편장부대상자 ③비사업자			
10	10) 시 고 유 현						[I4성실신고확인 20]간편장부 31]추계 - 기준율 32]추계 - 단순율			
(11)	<u> </u>						⑩비사업자 			
					<sup></sup>		③ 계좌번호			
	 세 -	<u> </u>			15 사업	· 나자				
	비리인	<u> </u>	)성 명		등록					
4	세인	박의	계산							
	구			분			개인지방소득세			
과	세			丑	준	17				
세					율	18				
산			출	세	액	19				
세			액	감	면	20				
세		액		공	제	21)				
결 세	정 액	종 합		과 세(①	9-20-21)	22				
		분	리 과 서	네 주 택 임 대 소 득		23				
<b>^</b> II		합		계(②+③)		24)				
	산			무(과소)신고 납부불성실 기 타 계(②)+②)+②)		25				
-1		세				26				
가						27				
						28				
추	가 납		납	부	세 액	29				
합				계(2	4+29+29)	30				
기	납 .		ŀ	부 세	액	31)				
납	부(	환급	t) 할	총 세	액(③0-③1)	(32)				
신	고인	은	「지방서	네법 . 제95		- 위	_  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			
실	그디	개로	를 정확	_			다.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			
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「 <b>지방세기본법」 제5</b> 4										
및	제 5	55조	에 따른	: 가산세 부	'과 등의 [	개상	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.			
년 월 일					잌		신고인 (서명 또는 인)			
							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			
		^		<b>ᆣᅮᆞᅷ</b> 알태표 1부	엉앙	귀ㅎ	하 5. 소득공제신고서 1부			
처브	루서-	류	2. 손익기	계산서와 부속			6.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세액공제・감면신청서 1부			
		11		<sup>단액시산표 1년</sup> 세산서(「소득세		<u>별</u> 7	7.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부 지 제46호서식) 1부 8. 그 밖의 첨부서류 1부			

<sup>\*\*</sup> 해당 첨부서류는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59제1항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「국세기본법」 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·납부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

## 1 ∼ 4 작성방법

- 1.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.
- 2. ② 주민등록번호란: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)를 적습니다.
- 3. ④ 납세지란:「지방세기본법」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「소득세법」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(이하 "주소지등"이라 함)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·군·구 단위까지 적습니다. 다만,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「지방세법」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
  - ※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납세지 1)일반적인 경우: 12월 31일의 주소지등

2)사망한 경우: 사망일의 주소지등

3)국외이전(출국)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: 출국일의 주소지등

- 4. ⑩ 신고유형란: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✔ 표시 합니다.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[4], [12], [11], [20], [31], [32], [40], [35]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.
- 5. ② 환급금 계좌신고란: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.
- 6. 3 세무대리인란: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만 적습니다.
- 7. ⑪ 과세표준란: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1)의 제3쪽 ㉑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.
- 8. ® 세율란·⑲ 산출세액란: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한니다
  - ※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,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,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「지방세법」 제93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.
  - ※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.
- 9. ② 세액감면란·② 세액공제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1)의 제3쪽 ②·③ 금액의 100분의10을 각각 적습니다.
- 10. ②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1)의 제35쪽 ② 금액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.
- 11. 가산세란: ② 무(과소)신고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, ② 납부불성실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에 따른 가산세, ② 기타란에는 「지방세법」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.
- 12. ⑳ 추가납부세액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1)의 제3쪽 ㉑ 금액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.
- 13. ③ 기납부세액란: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및 고지세액, 수시부과세액, 특별징수세액의 합계액(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된 세액 포함)을 적습니다.
- 14. ② 납부(환급)할 총세액란: ③ 합계 금액에서 ③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. 그 금액이 "0"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,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.

## 세 율 표 (「지방세법」 제92조제1항)

귀속년도	201	7년	귀속년도	2018년, 2019년	
과세표준	세율	누진공제액	과세표준	세율	누진공제액
1,200만원 이하	0.6%	-	1,200만원 이하	0.6%	-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	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 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22천원		2.4%	522천원
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	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
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	3.8%	1,940천원	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40천원
5억원 초과	4.0%	2,940천원	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40천원
			5억원 초과	4.2%	3,540천원